

보도시점 2024. 6. 4.(화) 12:00 (6.5.수 조간)
배포 2024. 6. 3.(월)

##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으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결실 맺는다

- 농식품부와 환경부,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와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가축분뇨법)」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‘이용’을, 환경부에서 ‘관리’를 담당하고 있다.

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‘원팀(One-Team)’이라는 인식 아래 △가축분뇨 및 퇴·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, △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, △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, △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「가축분뇨법」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.

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,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.

「가축분뇨법」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·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\*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,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.

\* (수집·운반업) <sup>현행</sup>2명 이상 → <sup>개정</sup>1명 이상, (처리업) <sup>현행</sup>3명 이상 → <sup>개정</sup>2명 이상

이번 「가축분뇨법」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△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, △시설원에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, 농·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.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,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“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,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
- 2.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책임자	과 장	서준한 (044-201-2351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정 (044-201-2362)
	환경부 수질수생태과	책임자	과 장	양우근 (044-201-7060)
		담당자	사무관	장재훈 (044-201-7064)



## 붙임 1 |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

### □ 추진 배경

-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

### □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시행령허가기준 합리화)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\*, 처리시설 관리 대행 시 기술인력 기준 미적용  
\* (수집·운반업) 현행2명 이상 → 개정1명 이상, (처리업) 현행3명 이상 → 개정2명 이상
- (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정비)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 정비(최근 2년간 → 1년간), 과태료 누적 회차 적용 기준 마련
- (시행규칙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) 가축분뇨 정의 활용하여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함
- (시행규칙 액비 살포기준 정비) 현재 초지·골프장·시험림에 더하여 시설원예·과수농업 등을 추가하여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(로터리)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- (시행규칙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)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정화처리한 방류수를 3개월마다 측정토록 함
- (시행규칙 관리대장 작성 개선) 현재 매일 기록하게 규정된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을 위탁 또는 반출·살포한 날에 작성토록 함

### □ 향후 계획

- 규제·법제 심사(~6월), 국무회의 후 공포(6~7월)

## 붙임 2 |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

